

2. 군 보충역 자원의 건설업 활용을 위한 병역특례업체 선정추천

자료제공 : 건설부

[참고사항]

1. 병역특례업체선정 추천현황

구 분	업 종	업 체 수	특례보충역 채용계획(명)		
			계	'91	'92
신 규 추 천	일 반 건 설	60	7,060	2,498	4,562
	전 문 건 설	8	631	274	357
	소 계	68	7,691	2,772	4,919
기존특례업체	해 외 건 설	5	625	207	418
총 계		73	8,316	2,979	5,337

2. 선정추천 기준

- 가. 종업원수가 100인 이상으로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 면허를 받아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
- 나. 도급한도액
- 일반건설업(토건) : 100억 원 이상
- 다. '90 건설공사 실적
- 일반건설업체(토건, 특수) : 100억 원 이상
 - 전문건설업체 : 50억 원 이상

3. 병역특례업체 신규추천 및 기존 특례업체명

가. 신규추천업체명(68개사)

- (주)우성건설(도급순위 10위), 동부건설(주)(11위), 신안종합건설(주)(13위), (주)한양(14위), 롯데건설(주)(16위), 벽산건설(주)(19위), 신화건설(주)(30위), 삼부토건(주)(34위), 범양건설(주)(44위), 경향건설(주)(70위) 등

나. 기존업체명(5개사)

- 현대건설(주)(도급순위 1위), (주)대우(2위), 삼성종합건설(주)(4위), 대림산업(주)(5위), 럭키개발(주)(7위)

4. 특례보충역의 채용 및 관리 : 별첨

1. 특례보충역의 채용

가. 대상인원(병특법 시행령 제18조)

- 현역 입영대상자는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별표 1)에 규정된 기술자격 소지자
- 방위소집 대상자 중 기술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나특례보충역 편입을 원하는 자(고졸 이하의 자)

※ 배정인원은 추후 병역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정함

나. 기능요원 편입원 출원 시기 등(병특법 시행령 제21조)

- 건설업분야의 특례보충역으로 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자는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해의 3월 31일까지, 병역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이 연기된 자는 졸업하거나 수료하는 해의 3월 31일(후기에 졸업 또는 수료하는 자는 9월 30일)까지 기능요원 편입원서 및 추천서에 특례업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지방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다만, 방위소집 대상자로서 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자는 입영기일 5일전까지 제출할 수 있음(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 다. 기술자격 미소지자에 대한 직업훈련(병특법 시행령 제23조의2)

- 특례업체의 장은 방위소집 대상자 중 기술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특례 보충역 편입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직업훈련실시 방법
 - 훈련의무업체 : 사업내 훈련기관 활용 또는 타훈련기관에 위탁훈련, 산업현장 훈련
 - 훈련 비의무업체 : 업체부담으로 위탁훈련, 산업현장 훈련
 - 직업훈련기간 : 3개월 이상
- 이 때에는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사업내 직업훈련 승인을 받은 후 업체별 상한인원의 범위내에서 채용하여 실시
-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업체의 장은 14일 이내에 업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 청장에게 직업훈련 입(퇴)소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함.
- 지방병무청장은 직업훈련기간과 자격시험 대기기간에 대하여 방위소집기일 연기
- 특례업체의 장은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기능자격 취득을 위한 지원책 강구
 라. 업체의무 종사기간 : 5년(병특법 제13조)
 - ※ 1년 이내의 직업훈련기간은 의무 종사기간에 합산
 - 마. 군사교육기간 : 4주(병특법시행령 제35조)
 - ※ 군사훈련은 특례보충역에 편입하는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실시

2. 기능요원의 편입(병역법 시행령 제18조)

- 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자는 기능요원이 편입원(추천)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특례업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재직(취업)증명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기술자격증 또는 해기사 면허증사본(입상확인서)
 - 병역증
 - 특례보충역 성실종사 서약서
- 기능요원편입원(추천)서를 받은 특례업체의 장은 특례업체별로 배정된 특례보충역의 상한 인원 범위내에서 기능요원 편입원(추천)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 7일 이내에 관할 지방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기능요원 편입원(추천)서를 받은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본적지 또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본적지 또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은 방위소집대상자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술계 및 기능계 자격을 취득한 자를 기능요원에 편입 처분하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3 도는 별표 5에 규정된 기술계 및 기능계 기술자격의 특급별 응시자격 학력 이상의 등급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야 함.

3. 기능요원의 복무관리

가. 불리한 처우 금지(병특법 제17조)

- 특례업체의 장은 특례 보충역에 대한 채용, 승진 및 급여 등 인사관리에 있어 특례 보충역에 종사할 것, 하고 있는 것 또는 하였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됨.

나. 특례관계 서류의 비치(병특법 시행령 제33조)

- 특례업체의 장은 특례보충역 명부 및 특례보충역 복무기록표 등 병적관계서류를 비치하고, 보직변경, 휴직, 정직, 파견, 국외여행 등 신상이동 사항을 기재, 정리하여야 함.
- 특례업체의 장은 특례업체 명칭의 변경, 소재지의 이전, 휴업, 영업정지, 직장폐쇄, 다른 업체와의 합병 또는 폐업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 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함.

다. 특례보충역의 보직제한 등(병특법 시행령 제24조)

- 특례보충역은 의무종사기간중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례업체간에 옮겨 종사할 수 없음. 다만,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특례업체간에는 옮겨 종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른 업체에서 종사하여야 함
 - 종사하고 있는 특례업체가 폐업하거나 선정이 취소된 경우(3일 이내에 다른 특례업체에 종사하여야 함)
- 특례업체의 장은 특례보충역이 다른 업체로 옮겨 종사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이 종사하는 특례업체의 장에게 특례보충역 복무기록표를 송부하여야 함.

라. 특례보충역의 신상이동 통보 등(병특법 제14조)

- 특례보충역을 고용하고 있는 특례업체의 장(특례업체의 장을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특례업체가 소재하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함.
 - 특례보충역이 고용되거나 퇴직한 때
 - 특례보충역이 해당 전문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
 - 특례보충역의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 특례업체가 휴업, 영업정지, 직장 폐쇄 또는 폐업하거나 특례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때
 - 특례보충역이 다른 특례업체로부터 전입한 때
 - 특례보충역에 휴직, 정직, 파견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 특례보충역이 정당한 사유없이 군사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마. 특례보충역 편입의 취소 및 의무부여(병특법 제15조, 병특법 시행령 제28조, 병특법 시행령 제31조)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특례보충역으로서 의무 종사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신상이동 통보를 받은 때 또는 그 사실은 안 때에는 특례보충역 편입을 취소함.
 - 특례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자
 - 해당전문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해당전문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자
 - 특례업체가 폐업하거나 특례업체의 선정이 취소되어 특례 보충역 편입사유가 취소된 자
 - 군사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자
- 특례보충역으로서 의무종사기간 중 위 각호의 사유로 특례보충역의 편입이 취소된 자는 병역법 제16조 제4항 및 동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영하는 해의 병역처분 기준에 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방위소집을 함. 이 경우 특례업체가 폐업하거나 특례업체의 선정이 취소되어 특례보충역 편입사유가 취소된 자로 1년이상 특례보충역으로 종사한 자는 종사기간 매 1년마다(1년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않음) 현역 병은 2월, 방위소집 복무자는 1월 씩 복무기간을 단축함. 다만, 병역법 제5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복무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함.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특례보충역으로서 의무종사 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신상이동 통보를 받은 때 또는 그 사실을 안 때에는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연장하여 종사하게 함
 - 특례업체의 휴업, 영업정지 또는 직장 폐쇄로 종사할 수 없게 된 자
 - 기타 휴직(유급휴직은 제외), 정직, 국외교육훈련 등으로 종사할 수 없게 된 자

바. 특례보충역의 복무만료(병특법 시행령 제30조)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특례보충역이 해당 전문분야에서 5년간을 종사한 때에는 의무종사 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종사기간을 마치는 날을 명시하여 복무만료의 처분을 하고, 특례보충역의무 종사기간 만료처분서를 해당군의 참모총장, 거주지 지방병무청장, 지방행정관서의 장 및 소속 특례업체의 장에게 각각 송부하고, 병역수첩에 그 처분내용을 기재, 정리하여 특례업체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송부하여야 함.
- 특례업체의 장은 특례보충역으로서 의무 종사기간이 만료되는자의 명단과 병역수첩 및 특례보충역 복무기록표를 의무 종사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25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사. 실태조사(병특법 시행령 제34조)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특례보충역의 복무실태, 신상이동 통보상태, 해당전문분야 종사여부, 특례업체 선정의 취소사유 해당여부 및 병적관계서류의 비치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특례업체별 또는 특례보충역이 종사하는 저문분야별로 매년 1회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음.

아. 특례업체 선정 취소(병특법 시행령 제16조)

- 특례업체가 폐업한 때(다른 특례업체에 합병된 때를 제외한다)
- 특례업체가 6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 특례업체의 선정요건을 상실하고, 1년이 경과하여도 선정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때
- 2년 이상 특례보충역 편입 대상자를 채용하지 아니한 때

※ 특례업체의 선정 추천권자는 특례업체가 폐업, 6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 선정요건(종업원수가 100인 이상인 국내 및 해외 건설업체)이 미달하게 된 때에는 1월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